



국가인권위원회공보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10월 15일

제 18권 제 5호

알 립

-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공 지 사 항

1	인사발령 등	796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800
3	진정접수 · 상담 · 민원 · 안내 처리 현황	803
4	진정사건 처리 현황	805

법령 · 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1 2020. 5. 14.자 결정 【2019년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81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1】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법령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와 입소 적격성 심사 에 의한 입소절차 마련 ㉡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최저기준 마련 ㉢ 정신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개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 【2】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추진목표와 계획, 정신요양시설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반영 할 것을 권고

2 2020. 6. 23.자 결정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832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다.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 라.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에서의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 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
- 【2】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의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 【4】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 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
- 가.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나.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합숙소에서의 인권을 침해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각 권고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1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429400 【경찰관의 부당한 소지품 압수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 845

경찰청장에게, 수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

- 【1】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증거물 등의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임의제출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규정을 마련
- 【2】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2 2020. 6. 22.자 결정 19진정0638800 【경찰관들의 가택 무단침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 854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주거의 자유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2020. 7. 27.자 결정 20진정0043600 【응급입원 사실 미통지 등에 의한 인권 침해】 862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피진정인이 소속된 직원들에게 응급입원 후 연고자 파악 및 통지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4 2020. 8. 14.자 결정 20진정0310500 【부당한 노동 부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등】 868

- 【1】 피진정인에게, ㉠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 ㉔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관할 시장에게,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목적이 아니거나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 행위 및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5 2020. 9. 1.자 결정 19진정0738200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절차 위반】 880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예외규정에 의한 지정 진단의료기관의 자체진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에 행정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6 2020. 9. 1.자 결정 20진정0456100 【격리·강박 시 부당한 기저귀 착용 등】 886

【1】 피진정인에게, ㉔ 환자의 기저귀 착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 ㉕ 환자들이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격리실 내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 ㉔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관할 구청장에게, 환자들의 기저귀 착용으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7 2020. 9. 1.자 결정 20진정0393100 【동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 절차 위반 등】 894

피진정인에게,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차별행위 조사결정

1 2020. 4. 28.자 결정 19진정0493800, 0939000 병합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901

피진정방송사에게 장기간 지속되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방송사의 대주주인 ○○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2020. 7. 27.자 결정 19진정0448400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937**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통지하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시각장애 개인이 접근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3 2020. 7. 30.자 결정 19진정0058400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차별**】 **942**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

4 2020. 7. 30.자 결정 19진정0595700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 **946**

피진정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출생순서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5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364600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에 대한 재난 지원금 미지급**】 **951**

피진정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

6 2020. 7. 30.자 결정 20진정0240300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 가정 불인정**】 **957**

피진정인에게,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

7 2020. 7. 30.자 결정 19진정0606100 【**대학의 직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962**

피진정인에게,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임금차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8** 2020. 8. 25.자 결정 20진정0118500 【대학교 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972
 피진정인에게,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8조 및 「학칙」 제75조를 개정하여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9** 2020. 8. 25.자 결정 19진정0980800 【기간제 직원에 대한 고용 차별】 ... 980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직고용한 기간제 직원에 대한 복지카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할 것을 권고
- 10** 2020. 9. 1.자 결정 20진정0242500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 시 편의 미제공】 9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 11** 2020. 9. 15.자 결정 19진정0391000 【직군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 995
 피진정인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지원직 직원을 배제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12** 2020. 9. 15.자 결정 20진정0297700 【공동교육과정 수당 지급에서 교육공무원 차별】 1009
- 【1】** 피진정인 1에게, 공동교육과정 일반강사 2종 강사료 지급에 있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
- 【2】** 피진정인 2에게, 개정된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 진정인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 1** 국내서 단행본 1017